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질문 업무에 대한 전문심사기관 지원 근거 마련〉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46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제221724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검사·질문 업무에 대한 전문심사기관 지원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5항 신설 등)	3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46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05.

3. 회 부 일 : 2026. 3.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8조).

Ⅲ. 검토의견

1. 검사·질문 업무에 대한 전문심사기관 지원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5항 신설 등)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질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질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u>
제48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생략)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⑤ (생략)	<삭제> 4.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제1항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할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정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3²⁾은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제12조의2제1항³⁾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2.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행위
 -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환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48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 ③ <삭제 2015.6.22.>
 -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심사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사실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⁵⁾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은 시장등에게 위임⁶⁾되어 있으나, 전담 인력 구성 미비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검사 추진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청구 사실 여부의 단순 확인에 그쳐 서류 검사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질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제도인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권 행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⁷⁾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⁸⁾,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검사·질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해당 분야에서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7) 2026년 기준 전담 직원 182명 운영 중임.

8)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지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⁹⁾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유사 제도 비교>

구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도운영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조사 수행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위임조항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 법률상 위임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직접 수행	지방자치단체장(226여개) ※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 위임
실무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사거부 제재	• 1년 이내 업무정지 •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내 업무정지 • 1천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국토교통부

9)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 및 시·군·구를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또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과잉진료¹⁰⁾ 등의 부정행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¹¹⁾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¹²⁾할 때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과태료 상향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국토교통부)

감독권 행사 시 전담 조직을 갖춘 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10)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함(김영국, 2023).

11) 김영국,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9.25.

12)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권에 불응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300만원 → 500만원) 필요성에 동의함.

(건강심사평가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사례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의 검사·질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의함.

(손해보험협회)

검사·질문을 전문심사기관이 지원함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상급병실 편법 청구, 한방 과잉진료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문 의 처
02)6788-5575